[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6-092호]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임원(비상임이사·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개요

직위	인원	주요업무	임기	보수
비상임이사	9명	o 재단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임명일부터 2년 (1년 단위 연임가능)	무보수
비상임감사	2명	o 재단 재산상황, 결산 등 감사	임명일부터 2년 (1년 단위 연임가능)	무보수

※ 모집 분야(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에 중복지원할 수 없음

2. 응모자격 : 다음 응모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응모자격
비상임이사	o「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o「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사회서비스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임원으로 2년 이상 사회서비스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비상임감사	o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o 사회서비스 또는 법률·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

3.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 가~나는 공통 결격사유, 다는 감사인 경우 추가 결격사유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9.(수) ~ 9. 16.(수), 18:00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jeonbukpass.fairyhr.com/)

※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라. 임용자격 적격여부 자가진단(소정양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소정양식) 1부

바. 학력증명서(전문학사·학사는 필수, 석사·박사는 해당자) 각 1부

사.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아.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 기타 증빙자료(논문·연구·포상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 각 1부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 첨부

6.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성 등 서류심사

※ 응모자 수가 모집 예정인원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 최종합격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나. 합격발표 :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개별안내

7. 기타사항

가. 접수 여부 미확인, 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모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나 기재된 내용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

마. 응모자 수가 모집 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이 경우 기존 응시자는 재공고 응시자에 포함)하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응시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개모집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063-906-40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